

94.12.9

용모제한 '무혐의'

여성계 반발확산

검찰이 여성 채용 때 용모제한 등을 규정해 여성단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기업체들에 대해 "여성 고유의 직종에서 자격제한은 남녀차별이 아니다"라며 기소유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여성계와 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등 2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는 8일 항의성명을 내어 "검찰의 무혐의처분 방침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노동부와 정무장관(제2)실의 태도 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검찰이 여성만을 뽑는 직종에서 용모를 제한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기업이 직원 채용 때 남녀를 분리모집하면서 여성에게만 비합리적인 기준을 계속 적용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여성위원회(위원장 윤순녀)도 성명에서 "검찰의 방침은 기업들이 여성의 업무능력보다 용모를 고용기준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해준 것"이라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경 기자